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죠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u>기간으로</u> 한다.</p>	<p>제 4 조(위원의 임기) ① <u>3년으로</u>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5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u>총괄</u>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5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u>통할</u>한다.</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u>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6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u>가부동수</u>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u>에 의한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 6 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u>한다.</p> <p>③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u>하고, <u>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의결한다.</p> <p>④ <u>제 1 항 내지 제 3 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 7 조(심의요구및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 2. 시장, 군수 3. 지정의료기관 <p>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③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p>	(삭 제)
<p>제 8조(수당및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제 7조(수당및 여비) <u>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
<p>제 9조(간사와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약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제 8조(간사와 서기) <u>의료보장계장</u>
<p>제 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제 9조(회의록) <u>위원 3명</u>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발췌)

● 醫療保護法 [1991. 3. 8 法律第4353號全文改正]

第3條(醫療保護審議委員會) ① 醫療保護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와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같다)에 醫療保護審議委員會를 둔다.
②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913호

관 보

1991. 9. 6.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노태우인

1991년 9월 6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안필준

◎ 대통령령 제13. 461호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醫療保護法施行令 改正理由

醫療保護法이 改正(1991. 3. 8. 法律 第4353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서울特別市·直轄市·道 및 市·郡·區에 設置하는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機能 및 그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